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1028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박영신, 김덕우

변 론 종 결 2022. 11. 3.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포항시 북구 C 임야 15,471㎡(1)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1.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1. 7. 27. 접수 제55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4983호로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4. ‘D은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5. 확정되었다.

나. D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02434호로 ‘포항시 북구 G 임야 15,4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6. 29.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7. 22. D을 대위하여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1. 7. 22. 접수 제55158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21. 7. 1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1,9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8. 피고의 남편 I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5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D의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18. I과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D, E, F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며, 그 조건으로 I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또한 위 사건으로 위 채무자들에 대한 집행으로 실제 받은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집행비용 공제 후). 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I에게 집행 및 추심업무 등 부수되는 모든 권한을 원고가 I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한다. 위 약정의 효력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쌍방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20. 11.경 I에게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73701 사건의 추심행위 및 추심금 수령행위를 I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I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I에게 집행 및 추심업무 등 부수되는 권한을 위임한다', 'I이 집행으로 실제 받은 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약정서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등 진정한 채권양도로 볼 수 없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약정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진정한 채권양도라기보다는 원고가 I에게 위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1. 7. 27. 접수 제55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D은 2019. 10.경 피고 및 피고의 전 남편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자신에게 넘어오면 반드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및 포항 방문 비용 등 제반 경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I은 2019. 11. 9.부터 2020. 3. 19.까지 D에게 21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D은 2020. 2. 4. 자신의 아내 J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D이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는 2020. 4. 9. D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D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거나 D이 무자력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D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기존 채권 1억 5,000만 원은 물론 위와 같이 지원한 500만 원 또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1) 소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에 별지 목록이 누락되어 있다.

소장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포항시 북구 C 임야 15,47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